

의안번호	제2865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11. 1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2865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14.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의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 나. 당항포관광지 운영 및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고성군으로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의 사업

- 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자원조달, 행사운영
- 나.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 다.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 라.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 마.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바.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사.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아.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 자.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 차. 국가·경상남도 및 고성군의 위탁한 사업
- 카.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출연의 법적 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

4.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나. 출연금액: 금3,800,000,000원(금삼십팔억원)

다. 출연목적: 2025년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

(당항포관광지 인력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라. 출연내용

- 세부사업별

(단위: 천 원)

산출근거	재단 요구액	증 감 (조정액)	출연금 편성액	비 고 (2023 결산)
합 계	6,000,000	△2,200,000	3,800,000	
소계(당항포관광지 운영)	3,936,229	△1,410,255	2,525,974	3,107,559
관광지 홍보 및 운영	762,580	△ 256,324	506,256	559,659
행사 및 시즌 이벤트 개최	120,000	△ 120,000	-	58,816
편의시설운영관리	1,123,491	△ 384,350	739,141	629,261
관광지환경개선	634,388	△ 251,227	383,161	495,816
공룡나라식물원운영	118,114	△ 28,234	89,880	113,155
전시관 운영관리	519,486	△ 158,100	361,386	570,325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658,170	△ 212,020	446,150	680,527
소계(재단사무국 운영)	2,063,771	△ 789,745	1,274,026	
재단사무국 운영	2,063,771	△ 789,745	1,274,026	

- 과목별

(단위: 천 원)

정책사업명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비고 (운영인력)
계	3,800,000	1,873,746	1,251,004	675,250	
당항포관광지 운영	2,525,974	844,782	1,005,942	675,250	통상 25명 휴일 6명
재단 사무국 운영	1,274,026	1,028,964	245,062	-	직원 17명

마. 2025년 재단 세입세출 내역(예상)

- 2025년 법인 세입: 83억 원

- 이월 및 출연금: 77억원(출연금 38, 순세계잉여금 39)

* 순세계잉여금: 2024엑스포 순수익 32, 2024년 집행잔액 7

- 수익사업: 6억원(당항포관광지 운영수익 6)

- 2025년 법인 세출: 83억 원

- 당항포관광지 운영, 2025공룡엑스포 추진, 재단사무국 운영

바. 당항포관광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추진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당항포관광지
영상관 개보수 등)

5. 예상사업비 산출내역: [붙임 1] 참조

6. 관련 법령 발췌문: [붙임 2] 참조

[붙임 1]

2025년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 출연금 산출내역

구 분	금액(천원)	내 역	비고
합 계	3,800,000		
소 계	506,256		
관광지 홍보 운영	관광지 홍보물 제작 등	15,600	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
	각종 물품임차료	32,000	정수기·장비·포스기 임차, 숙박시스템 등
	전기요금	240,000	20,000천원*12월
	전화 및 통신요금	15,600	1,300천원*12월
	공제회비	60,000	
	상하수도 요금	84,000	7,000천원*12월
	공용차량 유류대 등	13,196	공용차량(승합, 트럭) 유지
	광고홍보비	3,960	당항포관광지 광고비
	각종 용역수수료	41,900	경비, 해충방제, 방역, 소독
	소 계	739,141	
편의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526,257	전시관 및 영업시설 - 통상 14명, 휴일 6명 열차 운전: 통상 2명 야간경비: 격일 2명
	운영물품 구입	27,390	기계 임차, 소모품 구입
	영업시설 운영비	22,080	트램카 및 식당 운영비
	영업시설 재료비	60,000	한식관 등 영업시설 재료구입
	연금부담분	68,414	526,257천원*13%
	영업시설 보수	35,000	영업시설 보수, 냉난방기 수리
	소 계	383,161	
관광지 환경개선	인건비	191,425	환경미화: 통상2명 환경정비: 통상4명
	환경미화정비 소모품 구입	22,700	화장실 소모품·자재 구입
	각종 용역, 장비 유지	24,550	환경정비·시설정비 유지 화장실 비상벨 용역, 폐기물
	초화류 등 재료비	33,000	초화류·수목 구입
	연금부담금	24,886	191,425천원*13%
	환경·조경관리 시설비	86,600	화장실 정비, 초화류·조경수 정비
	소 계	89,880	
공룡나라 식물원 운영	인건비	29,911	식물원(6월): 통상1명
	식물원 유류비, 유지비	21,680	
	작업공구구입	16,400	
	연금부담금	3,889	29,911천원*13%
	식물원 시설개선	18,000	식물원 기능유지

구 분	금액(천원)	내 역	비고
전시관 운영관리	소 계	361,386	
	전시관 운영물품 구입	44,000	재료 구입, 소규모수선
	기계류 정비 및 유지비	45,386	공조기, 냉난방기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비
	전시관 기능유지 (시설비)	272,000	전시물 유지개선 124,000천원 전시관 설비보수 140,000천원
당항포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소 계	446,150	
	기반시설 소모품 구입	14,250	승강기 소모품, 각종 수수료
	기반시설 재료	65,500	전기자재, LED램프, 소공구 구입
	각종 위탁용역비	116,400	소방, 전기설비, 놀이시설, 하수처리시설, 비점오염 등
	기반시설 기능유지 (시설비)	250,000	공용시설물 안전점검 20,000천원 빛물펌프장,오수처리장 20,000천원 승강기 정비 10,000천원 상하수도 배관 점검 15,000천원 목재시설물 정비 20,000천원 비점오염시설 유지보수10,000천원 온고지신 놀이터 10,000천원 노후 보행로 정비 20,000천원 공룡조형물 보수 15,000천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30,000천원 CCTV 유지보수 20,000천원 전관방송 보수 20,000천원 긴급보수 40,000천원
고성문화 관광재단 운영	소 계	1,274,026	
	인건비	899,640	법인직원 17명
	일반수용비	65,290	사무국 각종 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10,200	우편, 재단 차량(1대) 유지비
	후생복지비(급량비)	34,072	직원 급량비, 맞춤형복지
	광고홍보비	10,000	각종 행사 등 언론홍보 4회
	여비	45,360	관내, 관외 여비
	회의비, 사업업무추진비	10,800	간담회, 이사회 회의 등 개최
	직무수행경비	48,360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교육훈련비	5,700	직원 교육, 안전보건교육경비
	자산취득비	10,000	직원 사무용 컴퓨터 10대
	정원가산, 부서업무비	5,280	
연금부담금	129,324	994,800천원*13%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